

# 고려시대 軍戶의 編制와 本貫制

李 相 國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머 리 말
- 軍額의 配定과 軍戶
- 軍役의 世襲과 本貫制
- 맺 음 말

## 1. 머 리 말

고려시대 軍人은 일반적으로 武班을 구성하는 隊正 이상의 將校가 아닌 일반 兵士를 지칭한다. 이들은 국가의 對民 科役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국가의 공공업무인 軍役을 담당하였다. 이 때문에 군인에 대한 초기 연구는 軍役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sup>1)</sup> 이 연구에서 군인은 직업적 군인층인 軍班氏族이었으며, 군반씨족과 이들의 子孫·親族이

1) 李白, 「高麗 軍人考」, 『震檀學報』 21, 1960; 「高麗 軍役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75.

형성한 軍戶를 바탕으로 세습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군인이 府兵制 下의 番上農民軍이었다는 이전까지의 견해를 부정한 것이다. 이후 군인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른바 軍班氏族說과<sup>2)</sup> 府兵制說이<sup>3)</sup> 그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던 군인의 성격에 대한 논의 구도는 二元的構成論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원적구성론은 군반씨족설과 부병제설을 혼용하여 중앙군 2군 6위 중 2군의 군인을 특수한 군인층으로, 6위의 군인을 番上入役하는 농민군인층으로 설정하였다.<sup>4)</sup> 여기에 당의 부병제를 검토하여 고려와 조선 초기 府兵의 성격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sup>5)</sup> 또한 개별 군인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는데, 고려시대 禁軍의 성격을 검토한 연구가 그것이다.<sup>6)</sup>

필자는 이전 연구에서 군인의 성격에 대한 기존연구가 합일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軍戶와 軍丁連立, 그리고 軍人田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있음을 주목하였다.<sup>7)</sup> 이에 軍役의 수행 주체를 軍戶로, 군호의 구성요소를 해당 호의 대표자인 軍人, 그리고 佃戶, 養戶, 族類와 隣保 등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고려시대 토지운영의 원리가 ‘職役に 따른 田丁의 분급’이었으며, 그 실행 방식이 ‘立戶充役’이었다는 이해에 토대를 둔 것이다.<sup>8)</sup> 또한 군인전의 분급이 2군과 6위에 차등적으로 주어졌을 것이라는 점

2) 대표적으로 李基白,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75.

3) 대표적으로 姜晉哲, 『軍人田』, 『高麗土地制度史研究』, 高麗大出版部, 1980.

4) 대표적으로 張東翼, 「高麗前期의 選軍-京軍構成의 이해를 위한 一試論」, 『高麗史의 諸問題』, 1986; 馬宗樂, 「高麗時代의 軍人과 軍人田」, 『白山學報』 36, 1990; 홍원기, 「高麗 二軍六衛制의 性格」, 『韓國史研究』 68, 1990; 鄭景鉉, 『高麗前期 二軍六衛制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吳英善, 「高麗前期 軍人層의 構成과 圍宿軍의 性格」, 『韓國史論』 28, 1992.

5) 金鍾洙, 「高麗·朝鮮初期의 府兵」, 『歷史教育』 69, 1999.

6) 宋寅州, 「高麗時代의 禁軍」, 『한국중세사연구』 3, 1996.

7) 李相國, 「高麗時代 軍役差定과 軍人田」, 『한국중세사연구』 15, 2003.

8) 이상국, 「고려후기 ‘本主’의 의미와 立戶充役」, 『역사와 현실』 46, 2002.

에 착안하여 군인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고는 군호의 규모 등 이전 논문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 국가의 통치체제와 수취체제 하에서 군인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고려시대 軍額이 나타나는 사료를 검토했다. 사료 상에서 산견되는 군액은 그것을 파악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본적인 파악방식은 군역의 차정대상인 軍戶의 數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군호의 규모를 재검토하고, 군액이 각 주현에 배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현에 배정된 군액이 고려시대 지방 통치원리인 本貫制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군역의 세습이 갖는 의미도 생각해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군인의 존재양상의 일단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2. 軍額의 配定과 軍戶

軍人は 軍役의 수행주체로서 국가의 對民 수취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들은 군사적 임무와 徭役 노동의 임무 등 국가 존립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였다.<sup>9)</sup> 이 때문에 軍役은 국가의 직역체제 하에 편입되어<sup>10)</sup> 正役으로 인식되었다.<sup>11)</sup>

고려 정부는 군인을 항상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군액의 확보는 군대의 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표 1>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 
- 9) 軍人の 임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李基白, 「高麗 軍役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75, 132~141쪽 참조.
- 10) 職役의 개념과 범주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군역이 직역이라는 데에는 연구자 간에 이견이 없다(權寧國, 「신분구조와 직역」, 『한국역사입문②』, 한국역사연구원, 1995).
- 11) 李佑成, 「閑人·白丁의 新解釋」, 『歷史學報』 19, 1962.

<표 1> 2軍 6衛의 編制<sup>12)</sup>

軍名	2軍		6衛						合
	鷹揚軍	龍虎軍	左右衛	神虎衛	興威衛	金吾衛	千牛衛	監門衛	
編制	1領	2領	保勝 10領 精勇 3領	保勝 5領 精勇 2領	保勝 7領 精勇 5領	精勇 6領 役領 1領	常領 1領 海領 1領	1領	45領

<표 1>은 고려시대 총 군인의 수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료가 없는 실정에서 군액을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여기서 고려시대 군대는 2군과 6위로 편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군은 鷹揚軍과 龍虎軍으로 구성되었는데, 총 3領이다. 6위는 左右衛, 神虎衛, 興威衛, 金吾衛, 千牛衛, 監門衛로 구성되어 총 42령의 군액을 이루고 있다. 1령은 『高麗史』兵志의 서문에 1,000명으로 나타내므로<sup>13)</sup> 2군 6위 45령의 총 군액은 4만 5천명이다. 그런데 <표 1>은 무편년 기사로 그 시기를 비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45령 4만 5천명이 고려시대의 군액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군액을 보이는 다른 기록을 고찰하여 위의 <표 1>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요청된다.

『高麗史』에서 군액을 보여주는 사료는 여러 곳에서 찾아진다. 앞서 소개한 兵志 서문에서는 태조대의 軍額이 6위 38령 3만 8천명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蒙古가 고려군의 징발을 위해 정확한 군액 보고를 고려 조정에 요구한 대목에서 고려 군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당시 元에 있던 王綽과 사신으로 파견된 李藏用 사이에 고려의 군액을 둘러싼 치열한 설전이 오고갔다. 왕준은 고려의 군액을 38령 3만 8천명으로 파악하였는데,<sup>14)</sup> 이는 태조대 군액을 염두해 둔 것이다. 그는 이어 당시의 군액을 대

12) 『高麗史』卷81, 兵1 兵制 二軍六衛.

13) 『高麗史』卷81, 兵1 序文. “高麗太祖 統一三韓 始置六衛 衛有三十八領 領各千人 上下相維 體統相屬 庶幾乎唐府衛之制矣.”

14) 『高麗史』卷102, 列傳 諸臣 李藏用. “時永寧公綽 在蒙古言 高麗有三十八領 領各千人 通

략 4만 명의 군인과 잡색군 1만 명으로 파악하여 원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왕준의 주장에 대해 이장용은 예전에는 4만 명이 있었으나 병난으로 거의 없다고 하였다.<sup>15)</sup> 몽고와 고려 간에 징병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 와중에 고려의 군역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고려 후기 私田改革論者들의 상소에도 고려의 군역은 등장한다. 趙仁沃은 고려의 군역을 42도부 4만 2천명으로 파악했다.<sup>16)</sup>

그렇지만 다음의 사료에서 나타나는 고려의 군역은 이보다 훨씬 많다. 서공은 고려의 군역이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칠 당시의 군역인 30만 군의 두 배정도라고 하였다.<sup>17)</sup> 서공이 다녀간 때가 고려 인종 1년(1123)이므로 그가 파악한 당시 고려의 군역은 60만 정도가 되는 셈이다. 또한 고려 후기 憲司의 上疏文에는 고려의 군역을 12만 명으로 파악했다.<sup>18)</sup>

두 부류의 사료를 통시대적으로 정리하면, 태조대에 3만 8천명이던 군역이 인종대 60만으로 늘어났다가, 원간섭기에 다시 4만 명 정도로, 이어 고려 후기에는 4만 2천명과 12만 명이 된다. 시간적 선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爲三萬八千人 若遣我 當盡率來 爲朝廷用 史丞相召藏用 至中書省問之 藏用曰 我太祖之制 蓋如此 比來 死於兵荒 雖曰千人 其實不然 亦猶上國萬戶牌子頭 數目未必足也 請與綽東歸 點閱 綽言是 斬我 我言是 斬綽.”

- 15) 『高麗史』 卷102, 列傳 諸臣 李藏用. “蒙古帝遣使徵兵于我 勅令藏用 來奏軍額 … 藏用對曰 我國昔有四萬軍 三十年間 死於兵疫殆盡 雖有百戶千戶 但虛名耳.”
- 16) 『高麗史』 卷78, 食貨1 田制 祿科田 禡王 14年 7月. “典法判書趙仁沃等 亦上疏曰 … 竊惟祖宗分田之制 躬耕籍田 所以奉天地宗廟之祀也 三百六十莊處之田 所以奉供上也 田柴口分之田 所以優士大夫 礪廉恥也 州·府·郡·縣·鄉·所·部曲·津驛之吏 以至凡供國役者 莫不受田 所以厚民生 而殖邦本也 四十二都府 四萬二千之兵 皆授以田 所以重武備也.”
- 17) 『高麗圖經』 卷11, 仗衛 序文. “初高麗在魏世 戶不過三萬 至唐高宗下平壤 收其兵乃三十萬 今視前世 又增倍矣.” 고구려의 군역에 대한 사실은 『舊唐書』 卷199下, 列傳 149下 渤海 靺鞨條의 다음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開元 十四年 … 昔高麗全盛之時 強兵三十餘萬 抗敵唐家 不事賓伏 唐兵一臨 掃地俱盡.”
- 18) 『高麗史』 卷81, 兵1 兵制 五軍 恭讓王 元年 12月. “憲司上疏 一 府兵 領於八衛 八衛統於軍簿 四十二都府之兵 十有二萬 而隊有正 伍有尉 以至上將 以相統屬 所以嚴禁衛禦外侮也.”

그 해답은 고려 후기 조인옥과 현사의 상소문에서 나타나는 군액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시기의 두 사람은 군액을 각각 4만 2천명과 12만 명으로 달리 파악했는데, 그것은 군액 파악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공민왕 5년(1356) 기사에 의하면 군호 편제원칙이 3家 1戶로 나타난다.<sup>19)</sup> 3家が 1軍戶를 형성해 군인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인옥은 3家を 1戶로 편제한 군호 수를 군액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현사에서는 군호의 편제 대상 家를 군액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이렇듯 산견되는 군액 사료는 그것을 파악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고려시대 군액의 대체적인 추이는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적은 수의 군액은 조인옥이 언급한 4만 2천명으로, 이는 군액을 軍戶의 수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현사가 파악한 12만은 군호를 이루는 家의 수이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표 1>의 2軍 6衛의 편제는,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군액을 이해하는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군의 3령=3천 명과 6위의 42령=4만 2천 명, 총 45령 4만 5천명은 편제된 군호의 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4만 5천명이라는 군액은 4만 5천 군호에서 차정된 군인의 수를 의미한다.

그러면 군호는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군역을 담당하는 기본 단위인 군호는 국가의 수취체제하에 편제되었다. 고려는 수취대상으로 편제된 토지와 인민을 일정 단위의 戶로 편제하였다. 당시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민은 국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파악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취대상 토지와 인민의 편제는 고려 초기 役分田制 성립 무렵부터 꾸준히 이어졌다.<sup>21)</sup> 토지에 긴박된 인민은 戶단위로

19) 『高麗史』 卷81, 兵1 兵制 五軍 禡王 9年 8月. “我太祖 獻安邊之策曰…一 軍民 非有統屬 緩急 難以相保 是以 先王丙申之教[恭愍王 5년; 필자] 以三家爲一戶 以百戶統主 隸於帥營 無事則三家番上 有事則俱出 事急則悉發家丁 誠爲良法.”

20) 李基白, 「高麗 初期 兵制에 관한 後代 諸說의 檢討」,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14쪽.

21) 이상국, 「고려 초기 役分田의 분급형태」, 『史林』 22, 2004.

국가의 공민으로서 租·庸·調 삼세를 부담하였다. 이들은 직역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丁戶로 파악되었고,<sup>22)</sup> 정호는 足丁과 半丁 단위의 농업 규모를 갖는 戶를 포괄하는 용어였다.<sup>23)</sup> 여기서 족정은 17결, 반정은 7결의 농업규모를 나타낸다.<sup>24)</sup> 이렇게 마련된 국가 재정은 지출용도에 따라 財政源으로 할당되었는데,<sup>25)</sup> 국가 유지에 필요한 관직자나 군인, 그리고 鄉吏 등 직역 종사자들과 각급 관청 등에 차등적으로 분급되었다. 군역을 담당하는 군인도 해당 토지와 인민을 戶단위로 편제하여 차정한 것이다.

직역을 담당하는 정호가 족정과 반정의 농업규모를 갖는 戶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군호의 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점은 지출용도의 중요도에 따라 국가 재정이 차등적으로 분급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군인의 층위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2군 6위의 군인은 일률적으로 같

22) 安秉佑, 「高麗의 屯田에 대한 一考察」, 『韓國史論』 10, 1984.

23) 金琪燮, 「高麗前期 田丁制 研究」, 釜山大博士學位論文, 1993. 김기섭은 족정호와 반족정호외에 역역을 담당하는 백정호도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필자는 백정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상국, 「고려후기 本主의 의미와 立戶充役」, 『역사와 현실』 46, 2002 참고.

24) 足丁이 17결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렇지만 반정의 규모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深谷敏鐵은 반정의 규모를 7~8결 정도로 추산하였다(「高麗足丁半丁再考」, 『朝鮮學報』 102, 1982). 李榮薰은 성종 11년(992)에 제정된 ‘公田租四分取一’ 규정을 통해 반정을 8결로 추정하였다(「韓國經濟史 時代區分 試論 - 戶의 歷史的 發展過程의 觀點에서 -」,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374~375). 윤한택은 공민왕 11년 白文寶의 箭子를 통해 구체적인 족정의 결수를 추정하였다. 백문보는 경상도의 漕運費이 다른 도에 비해 과도하자, 국가에서 이를 보충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때 족정에게는 7결, 반정에게는 3결을 가급하였다(『高麗史』 卷78, 食貨1 田制 租稅 恭愍王 11年 密直提學白文寶 上箭子). 국가에서 稅價로 충당하도록 가급하는 토지는 원래의 토지 비율에 따라 지급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족정 17결에 7결을 가급하였으므로, 같은 비율에 따라 3결이 지급된 반정의 규모는 대략 7.3결이 된다(「고려 전사과 체제하에서의 농민신분 - 그 제도적 기초로서의 足丁制의 성격과 성립」, 『泰東古典研究』 5, 1989). 이러한 견해에 따라 필자도 반정을 8결로 이해하였다(앞의 논문, 2003). 본고에서는 이전의 견해를 수정하여 반정을 윤한택의 7.3결을 받아들여 약 7결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군액과 군인전 규모를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25) 安秉佑,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出版部, 2002.

은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2군은 족정=17결, 6위는 반정=7결의 농업규모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6)</sup> 6위가 45령 중 42령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군역은 반정을 기준으로 차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 군역의 기준이 되는 <표 1>의 4만 5천 군역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2군 3령 3,000명은 족정 규모이므로, 이를 반정으로 하면 6,000반정이 된다. 그러므로 4만 5천 군역을 반정으로 환산하면 48,000반정이 된다.<sup>27)</sup>

이처럼 군역 대상 정호, 즉 군호는 1반정으로 7결정도의 규모를 갖는 것이 되는데, 이는 조선초기 호의 편제와 관련이 있다. 고려시대 정호와 조선초기 호와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에 의하면, 고려시대 정호와 조선초기 호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8)</sup> 조선초기 세종조의 전국 戶總이 약 20만 7천호, 結總이 163만 결이므로, 조선초기에는 戶當 8결의 규모를 갖는다.<sup>29)</sup> 그런데 이 수치는 고려에서 5도, 경기 이외의 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를 포함한 것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함경도와 평안도의 수치를 제외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조선초기의 호총은 16만 8천호이고, 결총은 120만 결이므로 호당 7.1결의 토지 규모를 갖는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 반정의 규모인 7결과 거의 같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초기 1호의 정수는 대략 9정으로 이해되고 있다.<sup>30)</sup> 조선초기 호와 고려시대 정호, 즉 반정이 같다면, 조선초기 호의 정수와 고려시대

26) 이에 대해서는 李相國, 앞의 논문, 2002 참고.

27) 李相國, 앞의 논문, 2003, 269쪽. 이렇게 이해할 경우 군인전의 총 규모는  $48,000 \times 7 = 336,000$ 결이 된다. 이전 논문에서 군인전의 총 규모로 추정된 38만 4천결을 33만 6천결로 바로잡는다.

28) 金琪燮, 『高麗前期 田丁制 研究』, 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93.

29) 李榮薰, 『韓國經濟史 時代區分 試論—戶의 歷史的 發展過程의 觀點에서』, 『韓國史의 時代區分에 관한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30) 李榮薰, 『朝鮮初期 戶의 構造와 性格』, 『歷史의 再照明』, 한림과학원 편, 소화, 1995; 金建泰, 『朝鮮後期 戶의 構造와 戶政運營』, 『大東文化研究』 40, 2002.

반정의 정수는 대략 일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정의 정수를 추산할 수 있다. 고려시대 반정의 총 수는 총 전결수 80만 결에 1반정 7결을 나누면 11만 3천 정도이다. 11만 3천 반정의 전체 정수는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조선초기 호수인 16만 8천호의 전체 정수와 같으므로, 1반정은 13정이 되고, 1족정은 26정이 된다.<sup>31)</sup>

1군호가 13정이라는 것은 일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사료는 대략적인 군호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 A. 東界兵馬使 吳延寵이 아뢰기를, “지금 징발한 内外의 神騎軍 중 부모의 나이 70 이상으로 독자인 자는 면역을 허락하고, 1호내에 3~4인이 중군했으면 1인을 감해줄 것이며, 재신과 추밀의 자 중 자원하지 않은 자는 면역하게 하십시오” 하니 따랐다.<sup>32)</sup>
- B. 家長이 口의 수를 누락하거나 나이를 증감하여 課役을 면하게 한 자는 1口면 徒1年, 2口면 1年半, 5口면 2年, 7口면 2年半, 9口면 3年으로 한다. 만약 (나이를) 增減하였으나 課役을 피하는 것이 아니면 4口를 1口로 하여 罪주고, 徒 1年半을 최고형으로 한다.<sup>33)</sup>

사료 A에서 예종 원년 吳延寵은 神騎軍으로 차정된 자 중 몇 가지 사유에 드는 자를 면역해 줄 것을 주청하고 있다. 그 중 “1호내에 3~4인이 중

31)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1반정을 18정으로, 1족정을 36정으로 추산한 바 있다(『高麗時代 職役差定과 職役田』, 『한국중세사연구』 15, 2003). 이는 조선초기 호수와 결수가 고려시대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전제하에서 추산한 것이다. 그런데, 고려에서 5도, 경기 이외의 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를 포함한 것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함경도와 평안도의 수치를 제외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점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반정과 족정의 정수를 추정하였다.

32) 『高麗史』 卷81, 兵志1 兵制 睿宗 元年 正月. “東界兵馬使吳延寵奏 今所徵發内外神騎軍 有父母年七十以上獨子者 聽免 一戶內三四人從軍者 減一人 宰臣樞密之子 非自募從軍者 亦免 從之.”

33) 『高麗史』 卷84, 刑法1 戶婚. “家長 漏口及增減年壯 免課役者 一口徒一年 二口一年半 五口二年 七口二年半 九口三年 若增減 非免課役 四口爲一口 罪 止徒一年半.”

군했으면 1인을 減해”주라는 부분이 주목된다. <표 1> 2군 6위의 편제가 군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군호에서는 1명의 군인이 차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1호 내에 3~4인이 차정되었다는 것은 1호의 규모가 卅丁 3~4인 이상이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사료 B는 刑法志 戶婚條의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대가족설의 근거 사료로 이용된다.<sup>34)</sup> 그렇지만 구수의 파악이 課役을 위한 것이므로 수취관련 사료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家長’은 해당 과역을 책임지는 자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가장’이 책임지는 課戶의 범주는 남정 9인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사료 B는 특수한 상황이라 치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료 A와 관련하여 보았을 때 課役 대상은 3~4정, 혹은 9정 이상도 존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군역을 담당하는 1군호=13정은 실제에 있어서 이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이를 군호 편제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또한 1군호가 13정이 되므로 총 군역인 48,000반정을 구성하는 전체 정은 62만 4천丁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서궁이 『高麗圖經』에서 고려의 군역을 60만 정도라고 한 것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한다. 徐兢은 宋의 사신으로 한달 남짓 고려에 체류하면서 고려의 풍속이나 인물 등을 파악해 1년 동안 『高麗圖經』을 집필했다. 그 기간동안 서궁이 기록한 하나하나의 사실들은 고려 체류기간 동안 그가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당시 宋에 알려진 고려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되었다. 그러므로 『高麗圖經』은 서궁 개인의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12세기 초 송의 고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그러므로 단지 한 달 남짓한 체류 기간에 외국인이 파악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당시 서궁 일행의 임무는 요와 금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에 지원병을 얻는 것이었으므로 고려

34) 崔在錫, 「高麗後期 家族의 類型과 構成」, 『韓國學報』 3, 1976;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史, 1981.

35) 여기서 말하는 軍戶는 군역을 부담지우기 위해 ‘편제된 戶’를 의미하는 것이다.

36) 趙東元, 「『宣和奉使高麗圖經』 解題」, 『고려도경-譯註 宣和奉使高麗圖經』, 황소자리, 2005.

의 군액에 대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서궁이 고려의 군액을 언급할 때 사용한 근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할 당시 고구려의 군액이다. 고구려의 군액이 그 정도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기서의 군액은 전쟁 당시 총 동원된 군인의 수이다. 이와 관련해 정종 2년(947) 光軍司를 설치하여 光軍 30만을 모아 거란의 공격에 대비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sup>37)</sup> 그러므로 서궁이 고구려의 두 배인 60만 정도로 파악한 고려의 군액도 전쟁시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수일 것이다.

그러면 2군 6위의 4만 8천 군액을 어떻게 배정했는가. <표 2>에 보이는 5도, 경기의 배정표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표 2> 5도, 경기의 군액 편제<sup>38)</sup>

道	軍事道	保勝	精勇	一品	計
交州道	春州道	133	776	572	1,481
	東州道		971	650	1,621
	交州道		477	305	782
	小計	133	2,224	1,527	3,884
楊廣道	廣州道	258	546	536	1,340
	南京道	133	864	529	1,526
	安南道	159	292	282	733
	仁州道	194	187	227	608
	水州道	175	291	372	838
	忠州牧道	241	357	520	1,118
	原州道	122	203	248	573
	淸州牧道	538	708	850	2,096
	公州道	326	553	527	1,406
	洪州道	338	497	713	1,548
	嘉林道	98	251	201	550
	小計	2,582	4,749	5,005	12,336

37) 『高麗史』 卷81, 兵1 兵制 五軍 定宗 2年. '定宗二年 以契丹將侵 選軍三十萬 號光軍 置光軍司.'

38) 李基白, 『高麗 州縣軍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7, 204~205쪽 '高麗史 兵志 所載 南道 州縣軍 一覽表' 재인용.

道	軍事道	保勝	精勇	一品	計
慶尙道	蔚州道	134	145	181	460
	梁州道	57	147	173	377
	金州道	188	278	431	897
	密城道	245	427	532	1,204
	尙州牧道	665	1,307	1,241	3,213
	安東大都護道	591	953	1,018	2,562
	京山府道	54	801	647	1,502
	晉州牧道	277	404	730	1,411
	陝州道	373	229	448	1,050
	巨濟道		50	128	178
	固城道	26	53	109	188
	南海道	17(行首并)	17	64	98
小計	2,627	4,811	5,702	13,140	
全羅道	全州牧道	150	1,214	867	2,231
	南原道	205	800	636	1,641
	古阜道	54	610	545	1,209
	臨陂道		341	200	541
	進禮道		211	152	363
	羅州牧道	454	848	922	2,224
	靈光道		401	368	769
	寶城道	322	412	513	1,247
	昇平道	240	184	415	839
	小計	1,425	5,021	4,618	11,064
西海道	黃州道	214	320	277	811
	谷州道	295	293	291	879
	安西大都護道	450	874	838	2,162
	豐州道	333	455	235	1,023
	甕津道	107	210	612	929
	小計	1,399	2,152	2,253	5,804
京畿	開城府道	52	240	190	482
	承天府道	50	160	113	323
	江華道	199	54	171	424
	長湍道	134	343	303	780
	小計	435	797	777	2,009
總計		8,601	19,754	19,882	48,237

<표 2>는 兩界를 제외한 5도, 경기의 군액이다.<sup>39)</sup> 앞서 살펴본 군호를 형성하는 2군 6위 48,000반정과 5도, 경기의 군액 48,237이 거의 유사함이 주목된다. 이는 2군 6위 각 령의 군액을 5도, 경기의 군액에서 채운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40)</sup>

5도, 경기에는 각각 군사도가 마련되었는데, 군사도는 44개로 나타나고 있다. 군사도는 留守官·都護府使·牧使·知事·防禦使·縣令 등이 파견된 京·州·府·郡·縣이 단위로 되어 있고, 관내의 屬縣에도 배치되어 있었다.<sup>41)</sup> 그러면 군사도로 지정된 지역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군액이 차등 배정되는 것인가. 이점을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자.

- C. 무릇 여러 주현에서 義倉을 거두는 법은 都田丁의 수를 사용하여 1과 공전에서는 1결에 조 3두를, 2과 (공전)과 宮院田·寺院田·兩班田에서는 (1결에) 조 2두를, 3과 (공전)과 軍人戶丁·其人戶丁에서는 (1결에) 조 1두를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이미 규정되었다. 만일 흉년을 만나 백성들이 굶주리면 이것으로써 급한 것을 구제하고, 가을에 갚도록 하되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sup>42)</sup>

위의 사료는 현종 14년(1023) 義倉租를 정한 내용이다. 의창조의 수취단

39) 5道, 京畿의 軍額 編制의 작성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신종 7년(1204)에서 高宗 2년(1215)으로 보거나(千寬宇, 『閔人考』, 『社會科學』 2, 1958), 인종 14년(1136) 이후(末松保和, 『高麗式目形止案について』, 『朝鮮學報』 25, 1962)로 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二軍六衛의 형성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종대 이후로 그 시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것은 현종대 이후 지방제도 개편이 일단락되는데, 군역제도도 지방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정비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李基白, 『高麗 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40) 末松保和, 『高麗四十二都府考略』, 『朝鮮學報』 14, 1959; 李相國, 앞의 논문, 2003.

41) 李基白, 『高麗 州縣軍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42) 『高麗史』 卷80, 食貨3 常平義倉 顯宗 14年 閏9月 判. “凡諸州縣義倉之法 用都田丁數收斂一科公田 一結租三斗 二科及宮寺院兩班田 租二斗 三科及軍其人戶丁 租一斗 已有成規 脫遇歲歉 百姓阻飢 以此救急 至秋還納 毋得濫費.”

위가 주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수취단위가 주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광종 즉위년(949) 歲貢額의 수취에서 이미 보이기 시작한다.<sup>43)</sup> 사료 C에서 수취가 주현을 단위로 정해지는 것은 각 주현 단위로 의창조 등의 세공액이 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공액이 배정될 때 기준이 된 것은 각 주현에서 파악된 ‘都田丁의 수’이다. 각 주현에는 1과·2과·3과 공전, 2과 공전에 상대되는 宮院田·寺院田·兩班田, 그리고 3과 공전에 상대되는 軍人戶丁·其人戶丁 등의 토지 지목이 존재하는데, 이들 토지 지목을 총괄하여 ‘都田丁’이라 칭하고 있다. 도전정은 모든 전정의 총액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각 주현의 1과~3과의 공전, 그리고 宮院田·寺院田·兩班田·軍人戶丁·其人戶丁 등이 田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정이 수취단위이자 양전단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sup>44)</sup> 주현의 각 토지지목은 전정으로 단위화된 토지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 주현마다 宮院과 寺院의 수, 그리고 양반·군인·기인 등 직역자의 수가 다르게 분포하고 있었고, 각 주현마다 ‘授田受田’되는 ‘도전정의 수’에 따라 직역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狻猊道 등 각도에서 관할하는 站驛役을 차정하는 사료에서도 확인된다. 驛役은 해당 驛에 정해진 丁의 다과에 따라 6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해당 驛의 役事가 긴요한가, 그리고 해당 驛이 沿路나 요충지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丁戶의 수가 조정되고, 이에 따라 驛役 부담의 科가 정해진다.<sup>45)</sup>

마찬가지로 군역도 해당 주현의 丁數나 토지의 결수, 그리고 군사 요충지로서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었을 것이며, <표 2>의 5도, 경기

43) 『高麗史』 卷78, 食貨1 貢賦. “定宗 四年 光宗即位 命元甫式會元尹信康等 定州縣歲貢之額.”

44) 尹漢宅, 『高麗前期 私田研究』, 高麗大博士學位論文, 1994.

45) 『高麗史』 卷82, 兵2 站驛. 이외에도 事審官의 數(『高麗史』 卷75, 選舉3 事審官 成宗 15年), 諸州府郡縣의 戶長 數(『高麗史』 卷75, 選舉3 鄉職 顯宗 9年), 諸州의 其人選上의 數(『高麗史』 卷75, 選舉3 其人 文宗 31年) 등을 정하는 사료에서 해당 州의 丁數나 중요도에 따라 각 직역자가 정해짐을 알 수 있다.

의 군액 배정에 따라 군인을 징발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고려 후기의 사료이기는 하지만, 경상도는 11,000, 양광도와 전라도는 각 10,000, 강릉·삭방·교주도는 합쳐 10,000, 서해도는 모든 壯丁을 징발하는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sup>46)</sup> 특히 서해도는 모든 장정을 징발하고 있는데, 유사시에는 군호로 편제된 각 호의 모든 壯丁이 차정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도 각 도의 사정에 따라 군사 징발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표 2>의 5도, 경기 군액 배정의 범주 안에서 징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5도·경기의 군액은 군사 거점으로서의 중요도, 각 지역의 호총과 구총, 그리고 결수에 따라 차등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각 지역의 호총과 구총, 결수, 그리고 侍衛軍, 營鎮軍, 船軍, 守護軍, 馬軍, 步軍, 長番水軍, 守城軍, 烽火軍 등의 병종이 나타나고 있다.<sup>47)</sup>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병종이 배정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군액을 호총과 구총, 결수에 따라 차등 배정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주현을 중심으로 배정된 군액이<sup>48)</sup> 일률적이지 않았으며, 군액이 배정되지 않은 군현도 존재했던 것이다.

46) 『高麗史』卷81, 兵志1 兵制 恭愍王 11年 8月. “遣使諸道 調兵 慶尙道一萬一千 楊廣全羅道各一萬 江陵朔方交州道共一萬 西海道盡僉丁壯.”

47) [표 2] 5도·경기 군액에 나타나는 보승군, 정용군, 일품군 등은 각 주현에 차등을 두어 군액이 배정된 병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精勇軍·保勝軍과 2군 6위의 精勇軍·保勝軍의 상관관계는 고려시대 병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사는 李在範, 「高麗前期의 地方軍制」, 『韓國軍事史研究』 2, 1999, 國防軍史研究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는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5도, 경기의 군액을 駐屯·駐在의 兵員數가 아니라, 그들 구역에 할당된 병원수로 볼 수 있다는 末松保和의 견해를 지지해, 精勇·保勝軍 同一論적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48) 李基白은 주현군은 경·주·부·군·현의 治所에만 배치된 것이 아니라 관내의 속현에도 배치되어 있었고, 주현군 조의 군액은 그 합계를 적은 것이라 하였다(『高麗 州縣軍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또한 군역은 향·소·부곡 지역 등에는 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소·부곡 등에 군역이 배정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자. 그것은 국가의 수취체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향, 부곡은 田丁이나 戶口 면에서 군이나 현이 될 수 없는 곳을 이르며, 所는 금, 은, 동 등의 물품을 생산, 공납하는 곳을 가리킨다. 특히 부곡은 公廩田, 屯田, 學田 등과 같은 국가 공유토지의 경작에 동원되는 특수한 역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다.<sup>49)</sup> 이는 향, 소, 부곡이 전정이나 호구 면에서 다른 군현과 같이 군호를 형성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군역에 비견될 만한 특수한 역이 부과되는 지역임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수취체제의 효율성 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군역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 3. 軍役의 世襲과 本貫制

군역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의 수취체제 하에서 해당 주현에 배정된 군역에 따라 부과·수행되었다. 이러한 군역의 복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를 참고할 수 있다.

D. 國制에 民은 16세가 되면 丁이 되어 비로소 國役に 복무하고, 60세가 되면 老가 되어 役에서 면제된다. 州郡은 해마다 計口籍民하여 戶部に

49) 朴宗基, 『高麗時代 部曲制 研究』, 서울대出版部, 1990.

50) 『高麗式目形止案』에는 所·部曲에서도 雜尺所丁과 部曲丁의 형태로 北界 지역의 軍額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李基白은 복계에 거주하는 모든 壯丁이 이 州鎮軍 조직 속에 상비군이나 예비군으로 파악되어, 屯田軍의 성격 가진 것으로 이해하였다(『高麗 兩界의 州鎮軍』,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1967). 양계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모든 장정이 군역으로 파악되고, 이 때문에 所·部曲도 군역에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올리는데, 무릇 군사 징발과 역의 부과[徵兵調役]는 戶籍에서 뽑아 정한다.<sup>51)</sup>

국가는 16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丁’으로 삼아 국역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정’이 부담하는 국역은 ‘兵’과 ‘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미루어 군역의 복무 기간은 16세에서 60세까지임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군역은 장기간에 걸친 역이었다. 이점은 군역을 담당하는 군인의 처지를 보여주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E. 兩京 諸領府庫의 軍人妻 가운데 30년 이상 (군인과) 헤어지지 않고 동거하며 지키는 자에게 財物을 차등있게 내렸다.<sup>52)</sup>

위의 사료에서 해당 군인은 30년 이상 군역에 복무하고 있다. 16세에 군역에 차정되었다면, 46세 이상이 되도록 군인으로 복무해야 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세까지 군역에서 면역될 수 없었을 것이다. 현종 20년에 “中外의 군사중 請託으로 征役을 면제받고자 하는 것을 금하였다”라는<sup>53)</sup> 규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 부모를 모셔야 할 경우 면역될 수 있었다. 앞의 사료 B에서 70세 이상의 부모를 둔 독자는 면역의 사유에 해당되었다. 그렇지만 이들도 부모가 사망할 때 다시 本役に 충당되었다. 문종 즉위년 사료에 의하면 内外의 軍丁 중 부모를 모실 형제가 없는 자에게는 부모를 侍養하게 하고, 부모가 돌아가면 다시 充軍하도록 하였다.<sup>54)</sup>

51) 『高麗史』 卷79, 食貨2 戶口 序文. “國制 民年十六爲丁 始服國役 六十爲老 而免役 州郡每歲計口籍民 貢于戶部 凡徵兵調役 以戶籍抄定.”

52) 『高麗史』 卷12, 世家 睿宗 3年 2月. “兩京諸領府庫軍人妻, 三十年以上, 不離同居守護者, 賜物有差.”

53) 『高麗史』 卷81, 兵1 兵制 顯宗 20年 閏2月. “禁中外軍士請托規免征役.”

54) 『高麗史』 卷81, 兵1 兵制 文宗 35年 10月 判. “凡内外軍丁 親年七十以上無他兄弟者 並令侍養 親沒 許令充軍.” 다음의 사료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高麗史』 卷81, 兵志1 兵制 文宗 卽位 判. “凡軍人有七十以上父母而無兄弟者 京軍則屬監門 外軍則屬村留二三品軍 親

이처럼 군역은 종신에 가까운 역이었다.

종신에 가까운 役이었던 軍役은 해당 군인이 연로하거나 병이 났을 때 자손이나 친족에게 대신하도록 하였다.<sup>55)</sup> 이점을 바탕으로 군역이 군인의 자손이나 친족에게 세습되며, 군역의 세습이 軍人身分 혹은 軍人階級을 사회적으로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56)</sup> 그런데 군역의 세습이 군인의 자손이나 친족에게 세습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F. 군인이 전쟁에 나아가 싸우다가 陣中에서 죽으면 本管頭目이 사실대로 보고하고, 이를 保結呈夏하면 例에 따라 상을 지급한다. 本戶 軍役은 舊例를 참작하여 1년 동안 恤養하고, 病死者에게도 또한 반년 동안 恤양하며, 年限이 지나면 그 軍戶의 다음 차례의 人丁[其次人丁]으로 軍役に 보충한다.<sup>57)</sup>

사료 F는 元 行中書省이 征東軍事에게 移牒한 내용 중 일부이다.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이 있는 군호에는 1년 동안, 病死者에게도 반년 동안 恤양하고 있다. 本戶 軍役의 恤양 연한이 지난 후 해당 군호에서 다시 군역을 차정할 때, 本戶 내의 ‘其次人丁’을 군역에 보충하였다. ‘其次人丁’은 군인의 자손이나 친족뿐만 아니라 佃戶, 養戶, 族類나 隣保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up>58)</sup> 이들이 구성하는 戶 단위가 군역을 담당하며 군역을 세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역의 세습은 자손이나 친족간의 군인 신분의 세습만을

沒後 還屬本役.”

55) 『高麗史』 卷81, 兵1 兵制 文宗 23年 10月 判. “軍人 年老身病者 許令子孫親族代之 無子孫親族者 年滿七十間 屬監門衛 至於海軍亦依此例.”

56) 李基白, 『高麗 軍役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7.

57) 『高麗史』 卷29, 忠烈王 6年 10月. “是月 元行中書省 移牒征東軍事 牒曰… 一 軍人對陣相殺 就陣亡沒者 仰本管頭目 從實供報 保結呈夏 依例給賞 本戶軍役 擬依舊例 存恤一年 若病死者 亦以存恤半年 限外 句起戶下其次人丁補役.”

58) 軍戶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李相國, 앞의 논문, 2003 참조.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군역이 세습되는 것은 고려의 지방통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G. 州鎮에 入居한 軍人에게는 예에 따라 本貫의 養戶 2人을 지급하였다.<sup>59)</sup>

H. 西京의 東西州鎮에 入居한 軍人에게는 本貫의 雜役을 면제한다. 만약 침탈하여 어지럽히는 자가 있으면, 그 色典의 記官을 죄주게 하였다.<sup>60)</sup>

사료 G는 州鎮에 入居한 軍인에 대해 養戶 2인을 지급하라는 문종 27년의 기사이다. 입거 軍인에게 지급되는 양호 2인은 軍호에 편제된 자들로 奉足の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입거한 軍인은 그의 本貫에 艱박되어 軍역에 차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본관은 <표 2>의 5도, 경기의 軍역표에서 보이는 軍사도 그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료 H는 인종 22년(1144) 西京의 東西州鎮에 입거한 軍인에게 본관의 잡역을 면제한다는 판문이다. 본관의 잡역은 입거 軍인이 軍역의 형태로 수행하는 요역노동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잡역의 수행처가 軍인이 입거하고 있는 서경의 동서주진이 아닌 본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거 軍인은 본관의 軍호에 편제되어 軍역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軍역 수행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의 본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軍역은 본관을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다. 軍인은 그의 본관에 편제되며, 軍역 및 잡역의 수행도 軍호로 편제된 본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軍역이 사실상 宗신에 가까운 역이었으므로,

59) 『高麗史』卷81, 兵1 兵制 文宗 27年 3月 命. “州鎮入居軍人 例給本貫養戶二人.”

60) 『高麗史』卷81, 兵1 兵制 仁宗 22年 判. “西京東西州鎮入居軍人 鑄本貫雜役 若有侵擾者 罪其色典記官.”

그가 속한 본관이 <표 2>에 보이는 군사도라면, 그의 군호는 대대로 군역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군역의 세습은 고려의 지방통치 방식인 본관제에 의해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본관제는 신라 말 고려 초기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정착되었는데, 노비와 揚水尺 등 천인을 제외한 양인들이 본관을 갖게 되면서 거주지는 물론 신분과 役 등을 파악하고 긴박하는 수단이 되었다.<sup>61)</sup> 여기서 본관제가 해당 지역의 役 등을 긴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해당 지역의 役 등에 긴박되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민의 이주가 제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관을 통한 이주의 제한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I. 旨를 내리기를, “流移鄉吏는 年限을 불구하고 이미 還本하였다. 지금 百姓으로서 流移하는 자는 또한 마땅히 畝환해야 할 것이지만, 流移한 지 이미 오래되어 安心土着한 상태인데 만약 모두 還本한다면 이리저리 옮겨져서 반드시 失農하고 말 것이니 前庚午年 이상의 예에 의거해서 이미 환본을 마친 자 외에는 모두 옮기지 말고 安業하게 하라”고 하였다.<sup>62)</sup>

사료 I는 충렬왕 11년(1285) 流移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기사이다. 향리는 年限을 불구하고 還本하였지만, 백성은 유이한 지 오래되어 安心土着한 상태이면 환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前庚午年’, 즉 원종 11년(1270) 이전에는 향리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유이민이면 일률적으로 畝환하여 거주지와 본관을 일치시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61) 本貫制와 관련된 사실은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출판부, 2000를 따랐다.

62) 『高麗史』卷30, 世家 忠烈王 11年 3月 辛卯 下旨. “一流移鄉吏 不拘年限 已曾還本 今百姓之流移者 亦宜刷還 然流移已久 安心土着 若皆還本 則彼此遷徙 必失農業 依前庚午年以上例 已訖還本人外 並皆不動 使之安業.”

63)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주가 거의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이점에 대해서는 蔡雄錫, 앞의 책, 2000, 121~125쪽 참고.

본관제에 의해 군사도는 군역을 계속해서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향, 소, 부곡 지역이 특수한 역을 수행한 것처럼 군사도로 설정된 지역은 배정된 군역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다. 군사도는 배정된 군역을 맞추기 위해 일정한 군호 수를 유지해야 했다. 따라서 한 번 설정된 군호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군역을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J. 그 領내의 十將이나 六十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타인을 제외하고 領내의 丁人으로 충당하고 中禁·都知·白甲 등으로 특별히 차정하는 것도 또한 (領내의) 丁人으로서 차출한다. 丁人戶에는 津牒을 지급하여 힘써 구휼할 것이다.<sup>64)</sup>

사료 J는 靖宗 11년 5월 揭榜 중 일부이다. 十將이나 六十, 즉 伍尉와 隊正 등에 결원이 생기거나, 領내의 中禁·都知·白甲 등으로 특별히 차정하는 경우에는 領내의 丁人을 차정하였다. 차출된 丁人戶는 津牒을 내려 구휼하고 있다. 이러한 군역의 차정에 차질이 없도록 고려 정부는 해당 丁人戶에 대한 구휼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sup>65)</sup> 주목되는 것은 伍尉와 隊正이나 특정 군역을 수행할 인원을 차정할 경우, 그것이 領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군역의 수행이나 세습이 領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군역의 차정이 일정 지역 단위로 구성된 丁人戶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결원이 된 군역을 해당 領내의 軍戶에서 충당해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종신에 가까운 복무기간, 영역적 지방통제 방식인 본관제에 의한

64) 『高麗史』卷81, 兵志1 兵制 靖宗 11年 5月 揭榜. “其領內十將六十有關 除他人 並以領內 丁人 遷轉錄用 中禁都知白甲別差 亦以丁人當差 丁人戶各給津貼 務要完恤.”

65) 다음의 사료도 국가의 軍戶에 대한 救恤策과 관련된 기사이다. 『高麗史』卷81, 兵志1 兵制 文宗 6年 3月 制. “東北路諸州鎮戍邊之卒 連年旱暵 飢饉相仍 可令兵馬監倉使及首領官 分道賑恤 仍賜衣服.”

군액 배정, 군현의 고정, 그리고 이주의 제한 등으로 인해 한번 정해진 군호는 계속해서 군역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므로 군역의 세습은 군역 수행 주체의 입장에서는 군인의 자손이나 친족 사이 혹은 군호의 구성원 사이의 세습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수취체제라는 관점에서는 군액 담당지역의 고정화와 이에 따른 군호의 고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4. 맺 음 말

본고는 국가의 통치체제와 수취체제의 관점에서 軍額의 配定 방식과 軍戶의 규모, 그리고 군역의 세습과 본관제와의 관련성 등을 살폈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산견되는 군액 관련사료를 검토한 결과 『高麗史』 兵志에서 나타나는 2군 6위 45령 4만 5천은 軍戶의 수를 의미하였다. 軍戶는 대략 半丁=7결 정도의 토지와 13정이 결합된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 총 동원 가능한 군인의 수는 서공이 『高麗圖經』에서 밝힌 60만 명 정도였음을 확인하였다.
- ② 2군 6위 45령의 군액은 군대의 편제로 5도, 경기의 군사도에 배정된 군액에서 채운 것으로 보인다. 5도, 경기의 군사도에 배정된 군액은 해당 주현의 丁數나 토지의 결수,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있게 배정되었다. 또한 향, 소, 부곡 등 특수한 역을 담당하는 지역에는 군역이 부과되지 않았다.
- ③ 종신에 가까운 복무기간, 영역적 지방통제 방식인 본관제에 의한 군액 배정 주현의 고정, 그리고 이주의 제한 등으로 인해 한번 정해진 군호는 계속해서 군역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므로 군역의 세습은 군역 수행 주체의 입장에서는 군인의 자손이나 친족 사이 혹은 군호의

구성원 사이의 세습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수취체제라는 관점에서서는 군역 담당 지역의 고정화와 이에 따른 군호의 고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군인의 존재양상의 일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인은 수취대상 토지와 인민을 편제한 군호에서 차정되었다. 군호에 편제된 구성원은 전호나 양호, 그리고 족류와 인보 등이었는데, 이들 중 군호의 대표자가 직역자인 군인이었으며, 그 이외는 '奉足'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군호 단위로 국가에 租·庸·調 三稅를 바쳤는데, 군역은 三稅 중 庸에 해당하는 '役'의 형태로 부담하는 것이었다. 한편 군사도로 지정된 주현에는 일정 정도의 군역이 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각 주현에서는 군역을 담당할 군호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할당된 군역은 본관제의 운영원리에 의해 고정되어 갔다. 본관제가 군역을 고정화하는 원리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역은 해당 군현 내부에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군인은 영역적 통치방식인 본관제 하에서 군호를 단위로 차정되었던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5. 8. 1, 심사완료일 : 2005. 8. 9)

주제어 : 군역, 군호, 군객, 2군6위, 本貫制

<ABSTRACT>

Formation and the *Bon-gwan* System of *Gunho*  
in the *Goryeo* Dynasty

Lee, Sang-kook

This case observed that assignment for the number of soldiers and scale of *Gunho* and relationship transmission by heredity of *Gunyeok*[軍役] with *Bon-gwan* System[本貫制] in terms of ruling system and receiving system. The summary is as follows.

① As a result of check referred historical records relating the number of soldiers, 2 *Gun* 6 *Wi* 45 *Ryeong* 45,000 appeared *Byeongji*[兵志] in 『*Goryeosa*』 meant the number of *Gunho*. *Gunho* composed of land about *Banjeong*[半丁] equals to 7 *Gyeol*[結] and scope of combination of 13 *Jeong*. Therefore total number of soldiers capable of mobilization in *Goryeo* Dynasty is about six hundred thousands people presented by *Seogeung*[徐兢] in 『*Goryeodokyeong*』.

② It seemed that the number of soldiers[軍額] of 2 *Gun*[軍] 6 *Wi*[衛] 45 *Ryeong*[領] was a formation in the Army, it filled up assigned in from 5 provinces and *Gyeonggi* province military plan. The number of soldiers assigned in 5 provinces and *Gyeonggi* military plan is assigned differently according to responsible number of *Jung* or land and importance of military fortress. In addition, special areas such as *Hyang*[鄉], *So*[所], *Bugok*[部曲] have not been assigned *Gunyeok*.

③ Once fixed *Gunho* had to be performed *Gunyeok* continuously because of the period of service close to whole life, assignment for the number of soldiers according to *Bon-gwan* System, which is regional ruling way, fix of

main *Hyeon*, and limitation of movement, etc. Therefore transmission by heredity of *Gunyeok* meant a transmission by heredity among descendants or relatives or member from viewpoint of main body performed *Gunyeok* and fixations of responding area for the number of soldiers and a fixing in terms of the national receiving system.

One part of the military condition for being based on above-mentioned in the *Goryeo* Dynasty is as follows. Servicemen assigned differently from *Guho* formed by land subject to receiving and people. The member formed in *Gunho* had *Jeonho*, *Yangho*, *Jokryu* and *Inbo*, etc., a representative of *Gunho* was a soldier charged directly and others played a role as '*Bongjok*(supporter for soliders, 奉足)'. They gave the three kinds of taxes such as *Jo*, *Yong*, *Jo*[租, 庸, 調] to the country with unit of *Gunho*, *Gunyeok* charged '*Ryeong*' as type of '*Yeok*(duty)'. Furthermore main *Hyeon* appointed as the military plan were assigned certain number of soldiers, each main *Hyeon* set *Gunho* to be charged *Gunyeok* accordingly. *Gunyeok* assigned by this way was getting permanent by operating fundamentals of *Bon-gwan* System.

The *Bon-gwan* System was used as fundamental to fix *Gunyeok*. Therefore *Gunyeok* trended to be fixed in responding internal *Gun Hyun*[郡縣]. So servicemen assigned differently with unit of *Gunho* under the *Bon-gwan* System, which is a regional ruling system.

Key Words : *Gunyeok*, *Gunho*, the Number of Soldiers, 2 *Gun 6 Wi*, *Bon-gwan* System